

2004년 제13차 합동간담회 일지

2004. 7. 2.

금융감독위원회
기획행정실

I. 회의 개요

□ 일시 : 2004. 7. 2(금) 14:30 ~ 18:40

□ 장소 : 금융감독위원회 소회의실

□ 참석자(8명)

○ 금감위 부위원장

○ 금감위·증선위 상임위원

○ 하성근·전성빈 금감위 비상임위원

○ 오용석·이상빈·곽수근 증선위 비상임위원

II. 논의 내용

1. 2004년도 제12차 합동간담회 일지 보고

⇒ 보고안대로 접수

2.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주식취득관련 검토

○ 금산법제24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

→ 금융자금을 이용한 산업자본 지배 방지 및 일반기업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

○ 투자목적이라면 투자회사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험사·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·투자자 등의 자금을 이용하여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융기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, 고객 등의 자금을 이용함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

○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5% 이하로 줄여야 하는지, 계열분리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

→ 현행법하에서는 5%이하로 줄여야 하며, 계열분리 과정

에서 취득한 지분 17.1%의 취득승인을 위해서는 시행령
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

- 계열분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
대하여는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, 동 부
분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법령 개정
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

-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
있는데 지배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
의에 대하여

→ 의결권이 없다고 지배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며, 의
결권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배를
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

-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과태료
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

→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취득
이 금지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태료부과 등의 제
재가 필요하다고 답변

- 과태료 부과는 ① 관련된 동일계열 금융기관 모두 과태
료를 부과할 것인지, 나중에 지분을 취득하여 금산법제
24조 요건에 해당하도록 한 금융기관에만 과태료를 부
과할 것인지 불명확, ② 관련된 금융기관 모두에 과태료

를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,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련된 금융기관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
-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
 - 5%이상을 취득할 때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승인 절차 없이 추가로 지분을 계속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
 - 위에 지적된 문제를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(누적적 처벌이 과징금 형태로 도입될 경우 과태료와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)

⇒ 보고안대로 접수하되, 다음 사항을 추가 논의 및 재검토

- 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전 금융기관에 금산법 제24조 준수를 다시 환기
-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7월말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토록 요구
- 법령 개정방안을 추가로 더 검토한 후, 법령개정방향을 감안하여 처리방안을 논의
- 과태료 부과 문제는 동 처리방안 논의시 재검토

/